DONG-A SOCIO HOLDINGS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동아쏘시오홀딩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7호의2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본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내역임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Ⅰ. 기업의 개요 4

Ⅱ. 지배구조 일반 5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5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6

3. 지배구조 특징 6

4. 지배구조 현황 7

Ⅲ. 주주 8

1. 주주의 권리 8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4

Ⅳ. 이사회 20

1. 이사회 기능 20

2. 이사회 구성 25

3. 사외이사의 책임 31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35

5. 이사회 운영 36

6. 이사회 내 위원회 42

Ⅴ. 감사기구 46

1. 내부감사기구 46

2. 외부감사인 55

VI.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57

1.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57

Ⅶ.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58

[첨부] 관련 규정 59

(1) 정관 59

(2) 기업지배구조헌장 72

(3) 이사회 규정 77

(4) 감사위원회 규정 85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90

(6)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93

Ⅰ. 기업의 개요

▷ 기업명 :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

▷ 작성 담당자 : (정) 재무전략팀 최용훈 팀장

(부) 재무전략팀 김혜성 대리

▷ 작성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강정석 외 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8.48%
		소액주주 지분율	37.15%
업종(금융/비금융)	금융	주요 제품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동아쏘시오		

요약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매출액	7,833	7,697	7,075
연결 영업이익	506	528	505
연결 계속사업이익	1,702	387	(1,731)
연결 당기순이익	1,624	200	(1,639)
연결 자산총액	15,111	13,586	12,419
별도 자산총액	9,137	8,364	7,961

Ⅱ. 지배구조 일반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2019년 3월 제정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근간으로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내부 의사결정주체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donga.co.kr) 및 DART(http://dart.fss.or.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정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당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전반(조봉순 이사), 회계·재무(이한상 이사), 보건의료행정(문창진 이사), 법률(김동철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기업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8년 3월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정석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8.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강정석	최대주주	보통주	1,692,715	27.50	
한종현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500	0.01	
박수정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344	0.02	
김민영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514	0.01	
박성근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690	0.01	
최호진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62	0.00	
상주학원	재단	보통주	30,315	0.49	
수석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26,766	0.43	
합계			1,753,006	28.48	

3. 지배구조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구성원 대비 약 57%), 2018년 4월부터 이사회 의장직은 대표이사직과 분리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조봉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지만, 주주가치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는 경영 전반(조봉순 이사), 회계·재무(이한상 이사), 보건의료행정(문창진 이사), 법률(김동철 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독·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다양한 사외이사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지배구조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대표자) (사내외이사 여부)	주요심의내용
이사회	4/7	조봉순 (사외이사)	· 주주총회의 소집, 재무제표의 승인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신규 사업의 추진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대표이사 선임,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 신주 및 사채의 발행, 배당 결정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3/3	이한상 (사외이사)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사후평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3	문창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평가보상위원회	3/3	김동철 (사외이사)	·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 수립 ·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 기타 보상 체계와 관련된 사항

Ⅲ.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2주 전 법적 기한에 맞춰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제72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1.02.25 (목)	2020.02.25 (화)	2019.03.05 (화)
소집공고일	2021.02.26 (금)	2020.02.25 (화)	2019.03.14 (목)
주주총회개최일	2021.03.29 (월) 오전 9시	2020.03.25 (수) 오전 9시	2019.03.29 (금) 오전 8시 30분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31일 전	주총 29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 / 지역	본점 / 서울시 동대문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소집통지서 및 의안 설명자료 게시, 주요 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e-mail 발송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소집통지서 및 의안 설명자료 게시, 주요 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e-mail 발송	자사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소집통지서 게시, 주요 주주에게 영문 소집통지서 e-mail 발송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7명 중 6명 출석	7명 중 6명 출석	7명 전원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여부	3명 중 2명 출석	3명 전원출석	3명 전원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이사 보수한도 반대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및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비용 절감을 위해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1.03.26, 2021.03.30, 2021.03.31	2020.03.13, 2020.03.20, 2020.03.26, 2020.03.27	2019.03.22, 2019.03.27, 2019.03.28, 2019.03.29
정기주주총회일	2021.03.29 (월)	2020.03.25 (수)	2019.03.29 (금)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해당	해당	비해당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예	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제73기 정기주주총회는 상정 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122명이며, 출석주식수는 3,759,889주입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62.07%에 해당합니다.

최근 2년간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	제73기 주주총회		2021.03.29 (월)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①)	① 중 의결권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제1호 의안	보통	제73기('20.01.01~'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057,156	3,759,889	3,730,887 (99.23%) 29,002 (0.77%)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6,057,156	3,759,889	3,757,897 (99.95%) 1,992 (0.05%)
제3-1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정재훈)	가결	6,057,156	3,759,889	3,748,630 (99.70%) 11,259 (0.30%)
제3-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백상환)	가결	6,057,156	3,759,889	3,748,630 (99.70%) 11,259 (0.30%)
제3-3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고승현)	가결	6,057,156	3,759,889	3,748,630 (99.70%) 11,259 (0.30%)
제3-4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문창진)	가결	6,057,156	3,759,889	3,752,167 (99.79%) 7,722 (0.21%)
제3-5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김동철)	가결	6,057,156	3,759,889	3,757,296 (99.93%) 2,593 (0.07%)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권경배)	가결	3,844,689	1,775,401	1,773,309 (99.88%)

정기	제73기 주주총회		2021.03.29 (월)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①)	① 중 의결권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2,092 (0.12%)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김동철)	가결	3,844,689	1,775,401	1,773,309 (99.88%) 2,092 (0.12%)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057,156	3,759,889	3,757,268 (99.93%) 2,621 (0.07%)
제7호 의안	보통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6,057,156	3,759,889	3,152,822 (83.85%) 607,067 (16.15%)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

정기	제72기 주주총회		2020.03.25 (수)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제1호 의안	보통	제72기('19.01.01~'19.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6,138,297	4,477,311	4,438,222 (99.13%) 39,089 (0.87%)
제2-1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한종현)	가결	6,138,297	4,477,311	4,443,688 (99.25%) 33,623 (0.75%)
제2-2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김민영)	가결	6,138,297	4,477,311	4,477,311 (100%) 0 (0%)
제2-3호 의안	보통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박성근)	가결	6,138,297	4,477,311	4,468,702 (99.81%)

정기	제72기 주주총회		2020.03.25 (수)			(단위 : 주)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 주식수 반대·기권 주식수
						8,609 (0.19%)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6,138,297	4,477,311	4,477,311 (100%) 0 (0%)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 행사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홈페이지(http://www.donga.co.kr)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 및 제안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또한 제안내용이 주주총회의 의안에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시 제안주주에게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과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제출 내역이 없습니다.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여부	찬성률(%)	반대율(%)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제출이 없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하여 2021년 3월 19일, 이사회 결의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거래소 공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공표한 뒤 언론을 통해 추가적으로 당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당사는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3년간 비경상적인 손익을 제외한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고, 3년간 3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오던 결산배당 뿐만 아니라 중간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주주환원 규모 내에서 배당 후 잔여재원으로는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당해 경영실적, Cashflow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1사업연도부터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3년간 비경상적인 손익을 제외한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고,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을 통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중간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총배당금	시가 배당률	배당성향	
							연결기준	개별기준
2020	12	보통주	-	1,000	6,057,156,000	0.8	3.73	8.31
2019	12	보통주	-	1,000	6,138,297,000	0.9	30.73	43.92
2018	12	보통주	-	1,000	6,138,294,000	0.9	-	-

주1)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 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임

주2) 2018 사업연도는 연결 및 개별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배당성향 측정 불가능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의결권 보장

당사는 2019년 3월 제정하여 공표한 지배구조헌장의 'Ⅰ.주주 - 2.주주의 공평한 대우' 항목에서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첫째,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셋째,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등입니다. 이에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식발행 현황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으며, 우선주식의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우선주 발행 시 상환권, 전환권, 상환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1주당 액면금액 : 5,000원)이며, 그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주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155,346주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2020년 중 장내매수 방식으로 자기주식 98,19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또한 없습니다.

[주식발행 현황]

(기준일 : 2020.12.31, 단위 :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	3,000,000	3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3,156,934	1,113,801	14,270,735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7,001,588	1,113,801	8,115,389	-
	1. 감자	7,001,588	700,348	7,701,936	회사 분할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413,453	413,453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6,155,346	-	6,155,346	-
Ⅴ. 자기주식수		98,190	-	98,19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6,057,156	-	6,057,156	-

(3) 주주와의 의사소통 현황

당사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투자자와의 신뢰형성을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반기, 연간 실적 발표 후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기업탐방미팅을 실시하고, NDR(Non Deal Roadshow) 및 Corporate Day를 통해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해외투자자를 위해 매년 영문으로 Annual Report를 제작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2019사업연도부터는 관련 내용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통합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국내 NDR 6회, Corporate Day 2회를 진행하였으며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탐방미팅을 총 69회 진행하였습니다. 2020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R 활동 현황]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0.3.5~6.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2020.5.20~21.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2020.8.24~25.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2020.11.19~20.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2021.2.25~26.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2021.5.20~21.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2020.9.9.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0.11.26.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회사 및 주요 계열사 소개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연락처와 전용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에도 IR 담당부서의 연락처와 전용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어 IR 담당부서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은 5회, 공정공시 내역은 1회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3.02.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 소집결의
2021.03.02	Decision on Cash Dividend and Dividend in Kind	현금배당 결정
2021.03.23.	Management Information related to Key Management Matters	2021년 ~ 2023년 주주환원 정책
2021.03.23.	Submission of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30.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정공시 내역]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3.19.	2021년~2023년 주주환원정책	1. 주주환원 규모 2. 정규 배당성향 3.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4) 기업정보 공개 현황

당사에 관련된 정보는 당사의 국/영문 홈페이지 (국문 http://www.donga.co.kr, 영문 http://en.donga.co.kr)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

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섹션에는 주가정보, IR자료, 정관, 이사회 규정, 주식분포 상황, 이사회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및 당사의 재무현황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donga.co.kr/Pass.da?viewPath=/b05/shareholder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장치 현황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관계사 및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

2020년말 기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USD)

구분	제공받은 회사	지급보증액	채권자	비고
종속기업	㈜인더스파크	13,000	엠에스당진제일차㈜	자금보충약정
공동기업	디엠바이오㈜	3,600	㈜신한은행	차입금 지급보증
		USD 600,000		
		10,200	미즈호은행	일반자금대출 지급보증 주)
합계		26,800		
		USD 600,000		

주) 주주간 약정에 따라 디엠바이오(주) 차입금 200억원에 대해 주주간 지분율(당사 지분율 51%)에 비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2020년말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범주	회사명	용역수익 등	배당금수익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경상연구 개발비	기타 수익	유무형 자산취득	사용권 자산 취득	이자 비용	기타 비용
종속기업	동아제약㈜	3,993,601	33,000,000	175,483	-	-	-	-	-	-
	디에이인포메이션㈜	19,949	-	435,385	-	-	172,987	-	-	-
	용마로지스㈜	708,664	2,490,000	48,203	5,120	14,082	-	-	-	-
	㈜수석	4,209	2,500,000	19,701	-	-	-	-	-	-
	아벤종합건설㈜ 주)	5,651	85,000	226,255	-	-	2,370	-	-	-
	㈜동천수	67,408	400,000	-	-	-	-	-	-	-
	㈜참메드	36,690	-	-	-	780	-	-	-	-
공동기업	동아오츠카㈜	34,689	659,816	26,443	872	45,498	-	-	-	-
	디엠바이오㈜	1,040,480	-	(480)	2,171,343	10,200	-	-	-	-
관계기업	동아에스티㈜	6,979,238	1,926,322	898,665	(793,304)	888	-	970	82,355	-
	에스티팜㈜	125,021	-	-	-	1,661	-	-	-	-
	한국신동공업㈜	284	75,000	(60)	-	-	-	-	-	-
	큐오라클㈜	2,730	-	-	-	-	-	-	-	-
기타	재단법인 상주학원	-	-	-	-	-	-	-	-	12,000
합계		13,018,614	41,136,138	1,829,595	1,384,031	73,109	175,357	970	82,355	12,000

주) ㈜철근종합건설은 2021년 2월 15일 아벤종합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말 기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범주	회사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리스부채
종속기업	동아제약㈜	379,705	3,530,087	32,154	-	-
	디에이인포메이션㈜	1,033	22,307	33,953	-	-
	용마로지스㈜	55,012	953,830	9,704	-	-
	㈜수석	-	328,863	2,905	-	-
	아벤종합건설㈜ 주1)	-	204,543	324	-	-
	㈜동천수	3,880	21,431	1,263	-	-
	㈜참메드	3,082	-	-	-	-
	디에스프론티어㈜ 주2)	-	-	14	14,000	-
	㈜인더스파크	-	-	28,241	-	-
공동기업	동아오츠카㈜	-	4,313	676	-	-
	디엠바이오㈜	97,082	3,049	57,466	-	-
관계기업	동아에스티㈜	432,731	1,489,097	144,928	-	2,032,095
	에스티팜㈜	13,698	-	-	-	-
	한국신동공업㈜	-	66	-	-	-
합계		986,223	6,557,586	311,628	14,000	2,032,095

주1) ㈜철근종합건설은 2021년 2월 15일 아벤종합건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2) 동아메디케어㈜는 2021년 3월 12일 디에스프론티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리스부채 차입	리스부채 상환	현금출자
관계기업	동아에스티㈜	970	634,539	-
공동기업	디엠바이오㈜	-	-	10,200,000
종속기업	디에스프론티어㈜ 주)	-	-	2,200,000

주) 동아메디케어㈜는 2021년 3월 12일 디에스프론티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Ⅳ.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7조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직무집행감독권을 부여하였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정관 제5장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승인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의 추진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table>
<tr><th>구분</th><th>승인 사항</th></tr>
<tr><td></td><td>·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등</td></tr>
<tr><td>재무에 관한 사항</td><td>·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등
·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기준</th></tr>
<tr><td>시설투자</td><td rowspan="5">자기자본</td><td>100분의 10 이상</td></tr>
<tr><td>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td><td>100분의 5 이상</td></tr>
<tr><td>단기자금의 차입</td><td>100분의 10 이상</td></tr>
<tr><td>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td><td>100분의 5 이상</td></tr>
<tr><td>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td><td>100분의 5 이상</td></tr>
<tr><td>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td><td>매출액</td><td>100분의 5 이상</td></tr>
<tr><td>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td><td>자산총액</td><td>100분의 5 이상</td></tr>
</table></td></tr>
<tr><td>이사 등에 관한 사항</td><td>·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td></tr>
<tr><td>기타</td><td>·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신설 등</td></tr>
</table>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이사회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임된 사항
감사위원회	·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사후평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평가보상위원회	·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 수립 ·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 기타 보상 체계와 관련된 사항

(3)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현재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지원부서는 직원 4명이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마다 사내 담당부서를 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실무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주체

당사는 2020년 3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을 포함하는 대표이사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3개월 전 또는 직무수행 불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대주주 혹은 최대주주가 지명한 사람, 재임기간이 긴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되며,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자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자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당사의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승계절차는 대표이사 후보자 평가기준 수립, 후보자 추천, 후보자 평가 및 선정, 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표이사 후보자 확정,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2개월 전 또는 직무수행 불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자 평가기준을 수립합니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후보자는 선임 시

연령을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을 위한 외부 공모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추천기간은 최소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추천기간 종료 후,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립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표이사 후보자 1인을 선정합니다.

이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사내이사가 아닌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후속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승계절차는 종료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서술한 대표이사 승계계획에 따라 2021년 3월 29일자로 정재훈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9일 기존 한종현 대표이사의 사의 표명에 따라 즉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월 2일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후보자 평가기준과 후보자 추천 요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13일간) 후보자 추천을 받았으며, 2월 17일에 개최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대면면접을 실시하여 정재훈 부사장을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월 25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통해 정재훈 후보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정재훈 후보자는 3월 29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이후 개최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당사 대표이사 승계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3)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상시적으로 계열사 경영진의 계열사간 전환배치, 계열사내 직무전환, 연수 등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교육은 1회 이루어졌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에는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가기회를 부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인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육성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일자	교육명	참석인원	주요 교육내용
2020.10.23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원특강	동아쏘시오홀딩스 임원 9명	4차 산업혁명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정책 전반

당사는 재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당사 및 주요 계열회사의 경영실적 및 분기별 주요 경영 이슈사항을 보고하여 검토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로서 계열회사별로 중장기 경영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이행실적 및 차이원인을 분석, 경영계획 수정/보완을 통하여 그룹사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프로세스수준·일반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매 사업연도 중간에 내부회계 설계평가 및 상반기 운영평가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및 2018년 7월「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COSO 2013 반영)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2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내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의 준법여부 및 회사경영활동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한편, 다양한 준법지원활동을 통하여 당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활동의 결과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도경영팀을 설치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기업윤리규정 제정,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및 반부패경영 기업문화 확산, 그룹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하며, 반부패 관련 내부 기준 제정 및 국제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공시관련 조직현황 및 공시관리 시스템 현황

당사는 경영지원실장이 공시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경영지원실 산하에 공시 담당자 정/부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매년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관련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 이사회는 정관상 3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최소 이사회 총원을 반영한 것이며, 최대 7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당사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관련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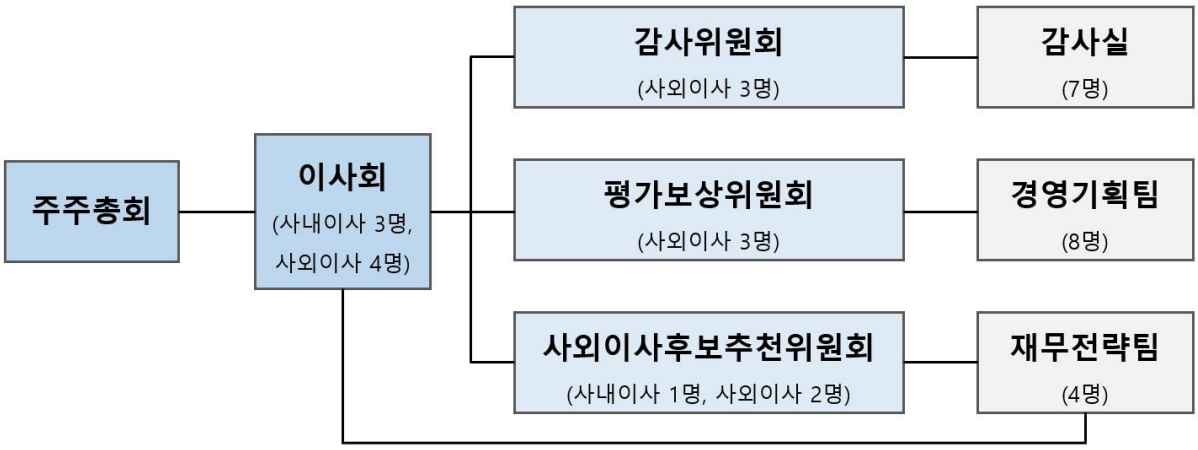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으며, 출장 등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조봉순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57%),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수행함으로써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	정재훈	남	· 대표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2021.03.29	2024.03.29	경영총괄	-
사내	백상환	남	· 경영기획실장	2021.03.29	2024.03.29	경영기획	-
사내	고승현	남	· 경영지원실장	2021.03.29	2024.03.29	재무·회계	-
사외	조봉순	남	· 이사회 의장 · 감사위원회 위원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2013.03.04	2022.03.29	조직·인사 (교수)	· 신한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 · (現)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선임일	임기만료 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외	문창진	남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2018.03.27	2024.03.29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차관 ·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이사장
사외	김동철	남	·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2018.03.27	2024.03.29	법률 (변호사)	·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 · (現)법무법인 현 대표
사외	권경배	남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2021.03.29	2024.03.29	회계·감사 (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Director · (現)회계법인 세진 감사본부 상무이사

(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당사는 다양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활용하여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외이사	권경배	남	C	· 이사의 업무 감독 · 회사 및 자회사 감사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	사외이사	조봉순	남	B	
	위원	사외이사	김동철	남	B	
평가보상위원회 (총 3인) (B)	위원	사외이사	김동철	남	A	· 성과평가 및 보상 기준 수립 ·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 기타 보상 체계와 관련된 사항
	위원	사외이사	조봉순	남	A	
	위원	사외이사	문창진	남	C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3인) (C)	위원	사외이사	문창진	남	B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으로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위원	사내이사	정재훈	남	-	
	위원	사외이사	권경배	남	A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의 사내이사는 총 3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정재훈 사내이사는 당사에서 2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기획팀장, 비서팀장, 정도경영실장 등을 역임하여 경영전략 및 경영혁신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상환 사내이사는 당사에서 21년 이상 근무하며 경영기획팀장, ㈜엠아이텍 경영기획팀장, 동아제약㈜ 경영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여 경영기획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승현 사내이사는 상장회사 재무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서 12년 이상 근무하며 영업기획팀, ERP추진단, 비서팀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봉순 사외이사는 경영학 박사로서 신한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25년 이상의 관련 업무 및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행동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경배 사외이사는 회계학 석사로서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Director, 감사원 6국 2과, 회계법인 세진 감사본부 상무이사 등 25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창진 사외이사는 사회학 박사로서 보건복지부 차관,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이사장 등 35년 이상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철 사외이사는 경영학을 전공한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로서 15년 이상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금융·자산유동

화·PF 등 금융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인 경영 및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적 특성에 맞는 제약 및 보건의료행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현재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하여 향후 여성 이사를 선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여부
사내이사	한종현	2017.03.24	2023.03.24	2021.03.29	사임	퇴직
	김민영	2017.03.24	2023.03.24	2021.03.29	사임	퇴직
	박성근	2017.03.24	2023.03.24	2021.03.29	사임	퇴직
	정재훈	2021.03.29	2024.03.29	2021.03.29	신규선임	재직
	백상환	2021.03.29	2024.03.29	2021.03.29	신규선임	재직
	고승현	2021.03.29	2024.03.29	2021.03.29	신규선임	재직
사외이사	조봉순	2013.03.04	2022.03.28	2019.03.29	재선임	재직
	이한상	2015.03.20	2021.03.26	2021.01.29	사임	퇴직
	문창진	2018.03.27	2024.03.29	2021.03.29	재선임	재직
	김동철	2018.03.27	2024.03.29	2021.03.29	재선임	재직
	권경배	2021.03.29	2024.03.29	2021.03.29	신규선임	재직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의 자격 및 경력을 고려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문분야, 자격 및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사외이사 비율 : 66.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자격요건 등의 평가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 소집통지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안건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각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세부적인 정보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0.02.25 (주총 29일전)	2020.03.25	사내이사	한종현	1. 후보자 주요 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 추천 사유	
		사내이사	김민영		
		사내이사	박성근		
2021.02.26 (주총 31일전)	2021.03.29	사내이사	정재훈	1. 후보자 주요 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5. 후보 추천 사유 6. 후보 직무수행계획	
		사내이사	백상환		
		사내이사	고승현		
		사외이사	문창진		
		사외이사	김동철		
		사외이사	권경배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는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강신호	남	명예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명예회장
정재훈	남	대표이사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CEO
백상환	남	상무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
고승현	남	상무보이사	등기임원	상근	CFO
조봉순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문창진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김동철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권경배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박수정	여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략
김이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업개발
장형채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정책혁신
김풍국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인재교육
고영은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총무
오무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감사
안철수	남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IT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원 선임 시 과거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징계기록 등을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의 책임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 및 이해관계 여부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조봉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문창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권경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동철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사외이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현은 당사의 자회사인 아벤종합건설㈜과 2019년 3월 세무·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4백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음 · 사외이사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현은 당사의 자회사인 아벤종합건설㈜과 2020년 3월과 2021년 4월, 2차례에 걸쳐 부동산 사업타당성 검토 계약을 맺고 연간 2억4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음

당사는 현재 6년을 초과하여 재직중인 사외이사로 조봉순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조봉순 사외이사는 경영학 특히 조직행동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지주회사인 당사의 사업영역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당사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고, 재직기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100%로 이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와의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별 구체적인 재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조봉순	8년 2개월	1. 경영학 교수로 전문역량이 탁월하여 지주회사로서의 경영의사결정에 도움 2. 재직기간 이사회 출석률 100%로 이사회 활동 충실 3. 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음	8년 2개월	-
문창진	3년 2개월	-	3년 2개월	-
김동철	3년 2개월	-	3년 2개월	-
권경배	2개월	-	2개월	-

당사는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이해관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독립성 평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계열회사, 최대주주, 회사 임원과의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 독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 평가 결과 사외이사 모두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김동철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당사의 자회사인 아벤종합건설㈜과 거래관계가 있으나,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충실성을 평가항목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직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매년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조봉순, 문창진 사외이사가 타기업의 감사 및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모두 비상근직입니다. 또한 조봉순, 문창진 사외이사 모두 최근 3개 사업년도 이사회 출석률이 각각 95% 이상이고, 사전 자료 검토를 충실하게 하여 이사회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조봉순 (감사위원)	2013.03.04	2022.03.28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제이엔케이히터㈜	감사	2010.03.22~ 현재	상장기업 (코스닥)
문창진	2018.03.27	2024.03.29	-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	2020.10.29~ 현재	상장기업 (유가증권)
김동철 (감사위원)	2018.03.27	2024.03.29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	-	-	-	-
권경배 (감사위원)	2021.03.29	2024.03.29	회계법인 세진 상무이사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당사는 신규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회사의 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담부서에서 당사와 계열회사의 개요 및 영업실적, 경영현안 등에 관련된 내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선임된 권경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는 2021년 5월 중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및 이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당사는 이사회 전담부서를 통하여 전체적인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각각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한 이사회 활동 및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담부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이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소 3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시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여부 등

당사는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지만, 통상 이사회 개최 전후 사외이사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비고
당사는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내역이 없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임기 만료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평가 프로그램을 검토 및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보수산정 및 재선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개최 빈도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여부, 의안자료 검토 등 관련 업무 수행시간,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연간 보수를 산정한 후, 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는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또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34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됩니다.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경영실적 보고와 주요 경영 이슈사항 검토 등을 위해 개최됩니다.

당사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안건 설명자료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0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사항	DMBio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임시	2020.01.02	2019.12.19	7/7
2차	결의 사항	제72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02.11	2020.02.07	7/7
	보고 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의 건	보고				
3차	결의 사항	제72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02.20	2020.02.16	7/7
4차	보고 사항	2019년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0.02.25	2020.02.19	7/7
	보고 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결의 사항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기업어음(CP) 발행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5차	결의 사항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03.20	2020.03.19	7/7
6차	결의 사항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0.03.25	2020.03.18	7/7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104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동아메디케어㈜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대표이사 승계계획 승인의 건	가결				
	보고	주가급락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의	보고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사항	건					
7차	보고 사항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0.04.24	2020.04.17	7/7
8차	결의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06.03	2020.06.01	7/7
9차	보고 사항	2020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0.07.24	2020.07.20	7/7
	결의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항	기업어음(CP) 발행의 건	가결				
10차	보고 사항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0.10.23	2020.10.14	6/7
	결의 사항	단기차입금 및 여신한도 연장의 건	가결				
11차	보고 사항	2020년 ABMS 경영검토 보고의 건	보고	임시	2020.11.13	2020.11.12	7/7
12차	결의 사항	자산 양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12.23	2020.12.17	7/7
	결의 사항	동아메디케어㈜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부동산 매도 승인의 건	가결				

[2021년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1차	결의 사항	기업어음(CP) 발행의 건	가결	임시	2021.01.28	2021.01.25	7/7
	결의 사항	지점 폐쇄의 건	가결				
2차	결의 사항	제73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02.08	2021.02.05	5/6
3차	결의 사항	제73기 결산서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02.17	2021.02.15	5/6
4차	보고 사항	2020년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1.02.25	2021.02.18	6/6
	보고 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결의 사항	준법지원인 선임(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항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5차	보고 사항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보고	임시	2021.03.05	2021.03.02	6/6
	결의 사항	차입금 연장 승인의 건	가결				
6차	결의 사항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	2021.03.29	2021.03.24	6/7
	결의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사항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사항	대표이사 경영승계 규정 일부 변경의 건	가결				
	보고 사항	동아쏘시오그룹 채용절차 점검 및 개선(안) 보고의 건	보고				
7차	보고 사항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보고	정기	2021.04.23	2021.04.21	7/7
	결의 사항	DS프론티어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책임감 있는 의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들의 개별 참석 및 찬반 여부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4회, 임시이사회 8회)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까지 총 7회의 이사회(정기이사회 2회, 임시이사회 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과 이사회 출석률·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개별 이사 출석 내역]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회차	개최일자	한종현	김민영	박성근	조봉순	이한상	문창진	김동철
1차	2020.01.02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차	2020.02.11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3차	2020.02.20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4차	2020.02.25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5차	2020.03.20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6차	2020.03.25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7차	2020.04.24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8차	2020.06.0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9차	2020.07.24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0차	2020.10.2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11차	2020.11.1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12차	2020.12.23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비고								

[2021년 개별 이사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비고
	개최일자	2021.01.28	2021.02.08	2021.02.17	2021.02.25	2021.03.05	2021.03.29	2021.04.23	
사내	한종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사임
	김민영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사임
	박성근	출석	불참	불참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사임
	정재훈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신규선임
	백상환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신규선임
	고승현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신규선임

사외	조봉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이한상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사임
	문창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김동철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불참	출석	
	권경배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신규 선임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한종현	사내	2017.03.24~ 2021.03.29	97.6	100	100	92.9	100	100	100	100
김민영	사내	2017.03.24~ 2021.03.29	97.6	100	100	92.9	100	100	100	100
박성근	사내	2017.03.24~ 2021.03.29	97.6	100	100	92.9	100	100	100	100
정재훈	사내	2021.03.29~ 현재	-	-	-	-	-	-	-	-
백상환	사내	2021.03.29~ 현재	-	-	-	-	-	-	-	-
고승현	사내	2021.03.29~ 현재	-	-	-	-	-	-	-	-
조봉순	사외	2013.03.04~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한상	사외	2015.03.20~ 2021.01.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문창진	사외	2018.03.27~ 현재	96.7	100	90	100	93.3	80	100	100
김동철	사외	2018.03.27~ 현재	97.2	91.7	100	100	100	100	100	100
권경배	사외	2021.03.29~ 현재	-	-	-	-	-	-	-	-
엄대식	기타 비상무	2016.03.18~ 2018.03.27	100	-	-	100	100	-	-	100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6.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상법 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하여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상법 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2017년 9월 선제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동 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1명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하고, 후보자를 검토, 선정하

여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보상위원회

당사는 2013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평가보상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을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보상제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평가보상위원회는 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회사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인원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각 이사들의 출석 및 참여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 재선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에 이의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이 예상될 때마다 개최되며, 2020년에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없어 0회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회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02.25	2/2	결의사항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주) 이한상 사외이사는 2021년 1월 29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내	한종현	100	-	100	100
사외	조봉순	100	-	100	100
사외	이한상	100	-	100	100

(나) 평가보상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초 개최하여 직전 사업연도 회사와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안을 결정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평가보상위원회는 2020년에 2회, 2021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0.02.25	3/3	결의사항	2019년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0년 성과평가 계획 및 보상(안) 승인의 건	부결
			결의사항	임원 기본연봉 테이블 인상(안) 승인의 건	가결
2차	2020.07.07	3/3	결의사항	2020년 회사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0년 임원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0년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안) 승인의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02.25	3/3	결의사항	2020년 회사 성과평가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1년 임원 기본급여 및 기본급여 테이블 인상의 건	가결
2차	2021.03.29	2/3	결의사항	2021년 성과평가 계획 승인의 건	가결

2)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김동철	100	100	100	-
사외	조봉순	100	100	100	100
사외	문창진	75	100	50	-
사외	이한상	100	-	-	100
사내	한종현	100	-	-	100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관련 개최 내역은 'Ⅴ.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감사기구

1. 내부감사기구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현황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해왔으나, 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당사 정관 제39조의3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권경배 위원이 맡고 있으며,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권경배 감사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 및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감사원 6국 2과, 회계법인 세진 감사본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25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회계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당사 감사위원회는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위원들 또한 법학·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사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권경배	'92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96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96-'00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Senior '99 고려대학교 회계학 석사 '00-'01 감사원 6국 2과 '01-'11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Director '12-현재 회계법인 세진 감사본부 상무이사	
위원	사외이사	조봉순	'0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경영학 박사 '07-현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10-현재 제이엔케이히터㈜ 감사	
위원	사외이사	김동철	'02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14-현재 법무법인 현 대표변호사 '16-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	

(2)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정책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39조의3에 따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2월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독립성 평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7조의2, 이사회 규정 제13조의3에 따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약산업, 법률, 경영, 경제, 금융, 회계, 세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상법 등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문성 및 독립성 평가 후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을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현황]

(1)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당사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내부회계관리 업무지침에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매 분기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회계결산 및 회사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감사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거나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관련된 거래처에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관계서류 및 장부, 증빙,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감사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의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 · 영업보고의 요구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대한 승인, 사후평가 ·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회사가 지정감사인 재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 승계계획의 승인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관련 법령 개정동향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요청하는 경우,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교육시간	참석 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0.01.09	상장회사감사회	1.5시간	김동철 감사위원	상장회사감사회 정기 조찬강연
2020.08.12	삼일회계법인 손정현 이사	1시간	이한상, 조봉순, 김동철 감사위원	회계부정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2021.05.10	동아쏘시오홀딩스 재경팀장, 재무전략팀장	3시간	권경배 감사위원	신규 감사위원 대상 외부감사인 핵심감사사항, 회계결산 주요 이슈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3)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절차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거나 외부감사인의 보고를 요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여부와 중지청구 여부를 결의합니다.

(4) 감사위원회 지원 및 지원조직 설치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감사위원이 직무수행시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당사 및 자회사의 업무감사 및 컨설팅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연 2회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의 책임자는 상무급이며, 1명의 임원과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 전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지원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직책	보유자격증
상무보	실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회계관리 2급 ISO 27001 선임심사원
부장	팀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회계관리 1, 2급 ISO 27001 선임심사원
부장대우	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회계관리 1,2급
차장	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회계관리 2급
차장	팀원	회계관리 2급 ISO 27001 선임심사원
차장	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과장(갑)	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감사사 회계관리 2급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경조직에서 매 분기 회계결산 결과와 회계검토 및 회계감사 시 주요 이슈사항을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5) 감사위원의 보수정책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및 법적책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가 동일하게 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와의 보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일 위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영구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책임감 있는 의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의 개별 참석 및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6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4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

다. 해당 기간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보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실의 내부감사결과 및 감사계획 보고 등이 있었으며,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내부회계관리자 승계계획 승인,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동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매 분기 회계결산 승인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한 후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2020년 2월과 2021년 2월에 대표이사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현황과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2020년 2월과 2021년 3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승인하여 이사회에 대면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0.02.11	3/3	보고사항	내부감시장치 운영현황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2차	2020.02.25	3/3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프로젝트 완료보고의 건	보고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3차	2020.03.17	3/3	결의사항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의견 확정의 건	가결
4차	2020.05.13	3/3	결의사항	2020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0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및 하반기 내부감사 계획 등 감사활동 보고의 건	보고
5차	2020.08.12	3/3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승계계획 승인의 건	가결
			결의	2019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사항		
			결의사항	2020년 반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6차	2020.11.13	3/3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중간 보고의 건	보고
			결의사항	2020년 3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0년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020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및 상반기 내부감사 계획 등 감사활동 보고의 건	보고

(2) 2021년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차	2021.02.25	2/2	보고사항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020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의 건	보고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동의의 건	가결
2차	2021.03.05	2/2	결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3차	2021.03.19	2/2	결의사항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사항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의견 확정의 건	가결
4차	2021.05.14	3/3	결의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1년 1분기 결산 승인의 건	가결
			보고사항	2021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및 하반기 내부감사 계획 등 감사활동 보고의 건	보고
			보고사항	2021년 감사실 신규프로젝트 추진안 및 정보윤리팀 신설에 따른 운영안 보고의 건	보고

(3) 2020년 개별 이사 출석 내역

구분		사외이사		
회차	개최일자	이한상	조봉순	김동철
1차	2020.02.11	출석	출석	출석
2차	2020.02.25	출석	출석	출석
3차	2020.03.17	출석	출석	출석
4차	2020.05.13	출석	출석	출석
5차	2020.08.12	출석	출석	출석
6차	2020.11.13	출석	출석	출석

(4) 2021년 개별 이사 출석 내역

구분		사외이사		
회차	개최일자	조봉순	김동철	권경배
1차	2021.02.25	출석	출석	미해당
2차	2021.03.05	출석	출석	미해당
3차	2021.03.19	출석	출석	미해당
4차	2021.05.14	출석	출석	출석
비고				2021.03.29 신규선임

주) 이한상 감사위원은 2021년 1월 29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이사	이한상	88.9	100	100	66.7
사외이사	조봉순	100	100	100	100
사외이사	김동철	95.2	100	85.7	100
사외이사	권경배	-	-	-	-

주) 권경배 감사위원은 2021년 3월 29일자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 외부감사인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수립 및 승인하고,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여 각 감사위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합산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비감사용역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입찰제안 요청 단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감사인 선임 후에도 비감사용역을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 시 회계법인의 내부품질관리수준, 감사업무수행팀의 산업전문성 및 경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18년 1회, 2019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은 입찰가격 20%, 감사품질 80%로 배분하였으며, 감사품질에 있어서는 회계법인의 역량과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항목으로 각각 세분화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개최된 회의에서는 기 승인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법인 제안서를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 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하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상 공개된 감리지적 비율과 감사보고서 정정 비율 등 간접적으로 감사품질을 알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의 자체적인 내부품질관리제도 등 회계법인의 역량 부분과 투입인력 및 투입시간의 적정성 등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부분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타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당사의 2019~2021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감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는 없었는지, 커뮤니케이션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019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02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사후평가는 2021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현황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핵심감사사항 및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논의,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보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경영진의 참석없이 삼일회계법인 담당 이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범위·감사보수 설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에 따른 감사계획 설명, 계열사 핵심감사사항 및 주요 이슈사항 논의 등이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감사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 및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구분	제출일	정기주주총회일	기한 준수여부	외부감사인
2019	별도재무제표	2020.02.11	2020.03.25	O	삼일회계법인
	연결재무제표	2020.02.20		O	
2020	별도재무제표	2021.02.08	2021.03.29	O	삼일회계법인
	연결재무제표	2021.02.17		O	

VI.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당사는 2019년 3월 이사회 결의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배구조헌장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Ⅶ.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O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2021.02.26(금) 소집공고 (주총 31일전)
	② 전자투표 실시	V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 이용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2021.03.29(월) 개최 집중일 : 2021.03.26/30/31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2021.03.19(금)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공시 및 주주총회 공표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Ⅳ-1-세부원칙3-② 참고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Ⅳ-1-세부원칙3-③ 참고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2018.04.20 이사회 결의로 조봉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조봉순 사외이사(8년 2개월 재직) Ⅳ-3-세부원칙5-① 참고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V		공시대상기간 3회 교육 제공 Ⅴ-1-세부원칙9-① 참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V		1명(권경배 감사위원장) Ⅴ-1-세부원칙9-① 참고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공시대상기간 8회 회의 개최 2020.02.25/03.16/05.13/08.12/11.13, 2021.02.25/03.18/05.14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및 Ⅴ-1-세부원칙9-① 참고

[첨부] 관련 규정

(1) 정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 정관

1949. 8 . 9 제정	1979. 2.26 개정	1997. 2.28 개정
1964. 3 .10 개정	1980. 2.27 개정	1998. 3.13 개정
1964. 4 .15 개정	1981. 2.26 개정	1999. 3.12 개정
1964. 5 .10 개정	1982. 2.26 개정	2000. 3.17 개정
1964. 7 . 5 개정	1983. 5.27 개정	2002. 3.15 개정
1968. 2 . 1 개정	1984. 5.29 개정	2003. 3.14 개정
1968. 6 . 3 개정	1985. 5.28 개정	2008. 3.14 개정
1969.11.01 개정	1986. 5.29 개정	2011. 3.18 개정
1969.11.25 개정	1987. 5.28 개정	2012. 3.16 개정
1970. 6. 12 개정	1988. 6.09 개정	2013. 1.28 개정
1972. 2. 28 개정	1989. 5.26 개정	2013. 3.15 개정
1974. 2.25 개정	1990. 2.27 개정	2018. 3.27 개정
1975. 2.24 개정	1991. 2.27 개정	2019. 3.29 개정
1976. 2.26 개정	1991. 6.19 개정	2021. 3.29 개정
1977. 2.25 개정	1992. 2.27 개정	
1978. 2.27 개정	1996. 2.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영문 Dong-A Socio Holdings Co.,Ltd.)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경영 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3.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5.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6. 주차장 운영업
7.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8.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9. 의약품소분업
10. 연구, 개발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등의 제공업 및 관련 용역 수탁업
11. 한약재 수출입 및 판매업
12.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임대, 수리 및 판매업
13. 식료품, 식품첨가물, 인삼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14. 화장품, 세제, 세정제, 비누, 도료, 프라스틱제품의 제조 및 매매업
15. 효소의 제조 및 매매업
16.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7.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18.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19. 전산용역 및 임대업
20. 조림, 육림 및 약초재배업(앵속제외)
21. 창고업 및 자동차 운수사업
22. 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매매업
23. 의약품가공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임대업
24. 교육 서어비스업 및 대행용역사업
25. 금형 및 기타장치 제조 및 매매업
26. Engineering용역업
27. 주류 수출입 중개업
28. 통신판매업
29. 자가측정 대행업
30.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31. 단미사료제조업
32. 주택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33. 조립식 주택사업
34.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
35. 아파트형 공장건설, 분양 및 임대업
36.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37. 상가, 업무용 시설의 건설, 공급, 판매 및 그 시공업

38.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39.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40. 전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공장과 지점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onga.co.kr)에 게재한다.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제7조의3 (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로 또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7조의2 제7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 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4 (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우선주식을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환청구 기간은 제7조의2 제7항에 정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3.29>

제7조의5 (상환전환주식) ① 회사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7조의3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조의4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실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소정의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공정거래법 소정의 자회사(이하 본 호에서 "자회사")를 추가하는 등 지주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소정의 자회사 포함) 또는 다른 회사의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 포함), 주식관련증권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을 현물출자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해당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2021.03.29>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우리사주조합과 이 회사간 체결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경우

제10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본조 개정 2021.03.29>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업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21.03.29>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본조 개정 2021.03.29>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2021.03.29>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제3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전환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본항 개정 2021.03.29>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 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3.29>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개정 2021.03.29>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이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 처분 등) ① 회사는 201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이하 본 조에서 "물적분할 자회사"한다)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영업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승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주로서 행사할 의결권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9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② (삭제) <2018.03.27>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18.03.27>

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의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일상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3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8.03.27>

제36조 (삭제) <2018.03.27>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03.27>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투자자문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평가보상위원회
4. 감사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3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선임한다.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상담역 또는 고문을 약간명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42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③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규정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19.03.29>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1.03.29>

(2) 기업지배구조헌장

기업지배구조헌장

2019. 03. 05. 제정

전문

동아쏘시오홀딩스(이하 “회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초석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이에 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 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지향한다.

Ⅰ. 주주

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Ⅱ.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고유 권한은 제외한다.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선임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4.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④ 이사는 필요한 경우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5.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모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사의 의무와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

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⑥ 회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처하고,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7. 평가 및 보상

①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진 평가 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Ⅲ. 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종업원, 채권자, 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③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⑤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Ⅴ.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공시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②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2. 기업경영권 시장

① 회사의 인수, 합병·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합병·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이사회 규정

이사회 규정

1969. 01. 01. 제정

1971. 01. 29. 개정

1987. 10. 06. 개정

2002. 12. 16. 개정

2006. 12. 0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8. 04. 20. 개정

2020. 02.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3조의2 (대표이사 승계계획) <신설 2020.02.25>

회사는 대표이사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계계획 실행 시 이사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의장 유고 시에는 정관 제34조 제1항에 의거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8.04.20>

제3장 회 의

제7조 (이사회의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2월, 4월, 7월,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 삭제 <2018.04.20>

제9조 삭제 <2018.04.20>

제10조 (소집권자)

① 소집권자는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

② 삭제 <2018.04.20>

③ 의장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2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04.20>

제12조 (결의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2.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3.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사전승인

③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의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개정 2020.02.25>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개정 2020.02.25>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의 추진

(3) 삭제 <2018.04.20>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삭제 <2018.04.20>

(13) 삭제 <2018.04.20>

(14) 삭제 <2018.04.20>

(15) 삭제 <2018.04.20>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20) 대표이사 승계계획의 승인 <신설 2020.02.25>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인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 100분의 5이상인 단일판매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3)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출자 또는 출자 지분의 처분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인 단기자금의 차입

(12)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담보제공, 채무보증, 채무인수, 채무면제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 및 증권의 대여, 가지급 결정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보고

4.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없다.

③ 각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운영방안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며, 위원회 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 <신설 2020.02.25>

①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전문성 : 제약산업, 법률, 경영, 경제, 금융, 회계, 세무 등

2. 독립성 : 상법 제 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회사와의 이해관계

제14조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항)

① 회사가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연초에 1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의 10% 미만인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③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8.04.20>

제16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19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20조 (사외이사의 활동지원 등)

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평가) <신설 2020.02.25>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외이사 독립성을 평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1.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71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0.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0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2018. 04. 20. 제정
2019. 03. 05. 개정
2020. 02. 25. 개정
2020. 07. 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이사회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감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청
4.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5. 금고, 장부, 기타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봉인
6. 회사 내 감사조직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독
7. 자회사 감사조직의 활용 등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승계계획)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의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승계계획 실행 시 감사위원회는 승계절차 이행을 감독한다.

제4조 (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상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장 운 영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중지청구 여부

(2) 영업보고의 요구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2) 자회사의 업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

(3)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사항

(4)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에 관한 사항

(5)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분·반기 회계결산 승인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7) 외부감사인 선정

(8) 외부감사인 해임에 대한 승인

(9)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11)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수령

(1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3) 회사가 지정감사인 재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4) 내부고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회계부서 담당임원 승계계획의 승인

(16)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본호 신설 2020.07.24>

제10조의2 (감사위원 독립성 평가)

회사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상법 542조의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평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감사위원회 활동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17.09.22 제정

2020.02.25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된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시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 중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외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20.02.25>

제7조의2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 <신설 2020.02.25>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1. 전문성 : 제약산업, 법률, 경영, 경제, 금융, 회계, 세무 등
2. 독립성 :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기타 회사와의 이해관계

제8조 (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2013.07.10 제정

2018.04.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이사회의 평가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원" 이란 상무에 종사하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관리자를 의미하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신설 2018.04.20>

제2조 (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4.20>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개정 2018.04.20>

① 위원회는 임원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개정 2018.04.20>

② 위원회는 매년 회사 전체 및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항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18.04.20>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개별 임원의 성과평가와 보상은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8.04.20>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04.20>

제2장 구 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8.04.20>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인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04.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8.04.20>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8.04.20>

제3장 회 의

제6조 (위원회의 소집) <개정 2018.04.20>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4.20>

② 삭제 <2018.04.20>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04.20>

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0>

⑤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8.04.20>

제7조 삭제 <2018.04.20>

제8조 삭제 <2018.04.20>

제9조 (의결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4.20>

제10조 (부의 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20>

1.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및 보상기준 수립 <개정 2018.04.20>
2. 매 사업연도 회사 전체 및 대표이사 성과목표의 승인 <신설 2018.04.20>
3. 매 사업연도 회사 전체 및 대표이사 성과의 평가 <신설 2018.04.20>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18.04.20>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통지의무)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0>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4.20>

제4장 보수의 지급

제15조 (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해당 직위와 개인의 실적에 따른 기본연봉과 회사 실적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구성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① 기본급여는 <별첨1> 임원 기본급여테이블에 따르며, 기본급여의 인상률은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04.20>

② 성과연봉은 회사의 정해진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8.04.20>

제17조 (지급방법)

① 기본급여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월단위 정액으로 지급하며, 성과연봉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보수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18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9조 (단수계산) 제 보수계산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0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